



정신 건강 시설에서의 행동 구속 축소 또는 폐지 (2013년 1월 30일)

행동 구속이란 무엇입니까?

행동 구속은 긴급 상황, 예를 들어 공격적인 또는 난폭한 행동 때문에 즉각 신체적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을 말합니다. 구속은 성인 또는 미성년자의 행동을 제약하게 됩니다. 이는 신체적 활동 또는 다른 사람의 몸에 정상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¹ 이때 완력을 사용하거나 손으로 붙잡는 행동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끈 구속구, 가죽 수갑 구속구 등 물리적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약물, 마취제 등 화학적 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행동 구속이 사람에게 고통 및 외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행동 구속은 외상을 유발하며 환자는 물론 직원에게도 신체적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설사 “안전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행동 구속은 공포감과 모욕감을 주며 장기적인 정신적 외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동 구속을 줄일 수 있습니까?

행동 구속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행동 구속은 환자가 단순히 시끄럽게 굴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도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구속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을 표명하고 있는 환자에게 시설 직원이 시설 규칙에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어떻게 행동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몸싸움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회복 중심의 위급 서비스에서도 행동 구속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동 구속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예. 정신 건강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캘리포니아주 주민에게는 과도한 구속의 불필요한 이용 등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¹¹ 사람이 본인의 행동을 제어하도록 도울 때는 덜 강제적인 위기 대응 기술 또는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행동 구속은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까?

행동 구속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즉각 신체적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막아야 하는 긴급 상황
2. 다른 덜 강제적인 방식이 실패한 상황
3.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 동안만 이용
4. 최대한 덜 강제적인 방식으로 이용ⁱⁱⁱ

행동 구속이 부적절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구속은 결코 “강압, 통제, 편의 또는 보복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iv} 또한 위급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다른 덜 강제적인 방식이 있을 때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환자가 시설에 입원할 때 환자와 치료 팀이 서로 논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구속은 결코 자동적인 방침(발생 가능한 위급 상황을 가정해 미리 작성된 방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속을 이용할 때는 자격이 있는 전문가(의사, 또는 주의 승인을 받아 치료 방침을 처방할 수 있는 기타 공인 전문가)가 그때마다 새로운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구속 방침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구속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사람의 손을 등 뒤로 돌려 붙잡은 상태에서 얼굴을 내리미는 등의 몇몇 행위는 특히 위험하거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속 당한 사람을 감시하거나 관찰할 때는 지켜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직원은 행동 구속을 이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습니까?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구속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개입 방법,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적절히 구속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필수로 이루어지지 않는 정신 건강 시설도 있습니다.

선행 지시가 있으면 피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까?

예. 시설은 발생 가능한 위급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환자가 입원할 때 당사자와 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초기 징후 또는 기제와 함께 가장 효과적인 위기 대응책을 파악하는 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과거 외상 또는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할 때는 당사자가 동석하기를 원하는 사람(가족, 배우자, 애인 또는 해당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 제공하는 정보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v

사건 발생 후 논의를 할 경우 행동 구속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까?

예.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목표 아래 철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문제 해결
2. 확인된 문제가 있는 경우 변경 작업 수행

3. 부정적인 효과가 남는 것을 제한 또는 단축

4. 사건 재발 방지

피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식이 있습니까?

예. National Technical Assistance Center는 구속 이용을 줄이는 핵심 전략 여섯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리더십을 갖추도록 해 긍정적인 변화 유도
2. 구속 이용에 대한 데이터를 향후 실행 시 참고
3. 직원 교육
4. 구속 및 위기 예방 도구 사용
5.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참여를 유도
6. 각 구속 이용 사례에 따르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논의^{vi}

위기 예방 및 조기 개입은 환자와 직원 간 논의가 따라야 하며 팀 전체가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하면 행동 구속을 피하는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구속 이용에 대해 고충을 제기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예. 자세한 내용은 다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County Mental Health Patients' Rights Advocate^{vii}
2.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Licensing & Certification^{viii}
3. County Bar Association^{ix}
4.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 전화번호: 1-800-776-5746.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자료를 읽은 후 간단한 설문 조사를 통해 귀하의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영문 버전: <http://fs12.formsite.com/disabilityrightsca/form54/index.html>

스페인어 버전: <http://fs12.formsite.com/disabilityrightsca/form55/index.html>

ⁱⁱ 참조: 복지 & 기관 코드 § 5325.1(c)

ⁱⁱⁱ 참조: Title 22, 캘리포니아 규정 코드, § 71545; 타이틀 9, 캘리포니아 규정 코드, §865.2(a)

^{iv} 참조: 건강 및 안전 코드 § 1180.4(k); 타이틀 9, 캘리포니아 규정 코드, § 865.4(a)

^v 참조: 건강 및 안전 코드 § 1180.4(a)

^{vi} 참조: <http://66.147.244.209/~tashorg/wp-content/uploads/2011/01/National-Technical-Assistance-Center.pdf>

^{vii} 카운티 환자 권익 사무소 목록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disabilityrightsca.org/OPR/pr_directory.pdf

^{viii} 참조: <http://www.cdph.ca.gov/programs/LnC/Pages/LnCContact.aspx>

^{ix} 참조: http://california.lp.findlaw.com/ca03_associations/cabar.html

CalMHSA(California Mental Health Services Authority: 캘리포니아 정신 건강 서비스 기관)는 개인, 가족 및 지역 사회의 정신 건강 증진을 추구하는 자치주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CalMHSA가 실시하는 정신 질환 예방 및 조기 치료 프로그램은 주민 투표를 통과한 정신건강서비스법(Mental Health Services Act) 조례 63조에 의거 자치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조례 63조는 그간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주민 및 캘리포니아 내 다양한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정신 건강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체제를 조달하고 구성하는 조례입니다.

